

# 순천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규정

제정 2013. 5. 31      개정 2013. 10. 16  
개정 2017. 9. 26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5조의3에 따라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 : Leaders in INdustry-university Cooperation) 육성사업단 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)**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및 연계체제 구축 운영
3.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업지원 체제 구축 운영
4. 인력양성 및 취업·창업 교육
5. 특성화 분야 육성
6.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3조(조직)** ① 사업단에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, 하부조직으로 기획·지원센터, 창업지원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, 산업생태계종합지원서비스센터, 기업장비지원센터, 산학취업지원센터 및 선취업후진학지원센터를 둔다. (개정 2017.9.26.)

② 단장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부단장, 각 센터장은 사업단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부단장이 기획·지원 센터장을 겸임한다. (개정 2013. 10. 16)

④ 기획·지원센터에는 행정직원을 둔다.

**제4조(임무)** ①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, 사업단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, 단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창업지원센터와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장은 대학 내의 관련자원 및 조직을 총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, 기획·지원센터, 산업생태계종합지원서비스센터, 기업장비 지원센터, 산학취업교육지원센터 및 선취업후진학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7.9.26.)

**제5조(LINC위원회)** ① 사업단에 LINC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단장, 교무·학생·기획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사업 참여대학 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사업단 참여학과 전임교원, 산업체·학교·연구소·유관기관의 인사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학내·외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의 기본 방향·전략 설정
2.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
3. 예산의 수립 및 항목 간 변경
4. 규정의 개정 및 폐지
5.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기타 위원회)**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·조정·심의하기 위하여 LINC기획위원회를 두고, 사업단의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전담인력)** ① 사업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.

1. 비전임 산학협력전담교수
2. 기자재 운영 인력
3. 연구보조 및 행정인력

② 비전임 산학협력전담교수(이하 “전담교수”라 한다)는 「순천대학교 비전임교원인사에 관한 규정」 제26조 제2항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. 다만, 단장은 전담교수 채용 계획의 공고, 임용, 보수 등에 대하여는 산학협력 단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임용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범위 안에서 정하며, 그 밖의 임무, 임용,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「순천대학교 비전임교원인사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④ 그 밖의 전담인력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재정 및 회계)**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산업체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② 사업단의 재원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.

③ 사업단의 회계는 「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) 육성사업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」 및 「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」에 따른다.

**제9조(성과급 및 수당)** ① 단장은 이 사업의 참여인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단장은 주관부처 장관이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.

**제10조(운영세칙 등)**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(LINC) 운영 규정」에 따른다.

②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LINC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3. 5. 3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업단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폐지지침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단 운영지침은 폐지한다.

부 칙(2013. 10. 1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